

제43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8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집단소송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6)
2.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6)
3. 집단소송법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0)
4.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1)
5.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4)
6.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9)
7. 집단소송법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4)
8. 집단소송법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7)
9. 집단소송법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7)
10. 집단소송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4)
11. 집단소송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9)
12. 집단소송법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2)
13. 집단소송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5)
1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7)
1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0)
1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0)
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1)
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0)
1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7)
2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76)
2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211050)
2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9)
2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3)
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0)
2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1)
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3)
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9)
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3)
2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3)
3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3)
3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2)
3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2)
3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4)
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6)
3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7)
3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1)
37.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0)
38.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8)
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8)
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2)
4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7)
4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5)
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9)
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3)
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2)
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55)

상정된 안건

1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7) 4
1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00)	4
1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0)	4
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1)	4
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0)	4
1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7)	4
2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76)	23
2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0)	23
2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9)	23
2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3)	23
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0)	23
2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1)	23
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3)	26

(16시13분 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월 7일자로 우리 소위원회에 서영교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전현희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이 보임되었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아 위원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오늘 회의에서는 집단소송법안 등 4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집단소송법안들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967)
1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00)
1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390)
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591)
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530)
1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577)

(16시14분)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6건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혜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소위 자료 첫 페이지 보시면 지금 오늘 6건의 안이 상정이 돼 있고 2건은 작년 2월에 이미 소위에서 한 번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금 6개 개정안의 내용은 다 독립몰수제 도입에 관한 내용이고 각각 의원님들 안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만 표로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범죄 그다음에 요건 그리고 제삼자에 대한 독립몰수 그리고 독립몰수 명령의 형식, 시행일과 적용례 등에서 의원님들 안 간에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절차적인 부분들은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계셔서 앞의 2, 3페이지에는 간단하게 차이점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6페이지 보시면 독립몰수제를 적용하는 대상범죄가 의원님들 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정애 의원안과 서왕진 의원님 안은 범죄수익 규제법에서 다루는 모든 범죄들을 다 독립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칸에 있는 장경태 의원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그에 터 잡은 횡령·배임·뇌물 이런 죄들을 독립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상범 의원안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보면 그 범죄수익을 추정할 수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범죄라든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들인데요, 이 범죄들로 인한 수익을 독립몰수 대상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균택 의원님 안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그 아래쪽에 쪽 열거를 하고 이 범죄행위에 터 잡아 획득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공무원의 살인이나 헌정질서 파괴,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그다음에 수사·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건의 조작·은폐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계시고 박균택 의원님 두 번째 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그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도박 그다음 마약류 범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범죄가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 안 간에 차이가 있다고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 8페이지 보시면 그렇다면 독립몰수의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인데요, 9페이지 표로 보시는 게 간단하실 겁니다.

한정애·유상범·박균택·서왕진 의원안의 경우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요건에 넣었고요. 그 여섯 분 의원님들 안이 모두 다 공소제기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공소제기 안 하는 사유는 또 다 각각 달리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안은 범인의 사망 그다음에 공소시효 완성 그다음에 한정애 의원안은 행위자 사망·불특정·소재불명, 공소시효 완성, 유상범 의원안은 범인의 사망 그리고 성명은 알 수 없지만 그 범죄와 몰수대상이 특정되는 경우 그리고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로 열거하고 계시고요.

박균택 의원안은 범인이 사망, 공소시효 완성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은 범인 사망과, 아까 유상범 의원안과 동일합니다. 성명은 몰라도 범죄와 대상물이 특정된 경우 그리고 범인의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로 열거하고 있고요.

서왕진 의원안은 범인 사망과 그 외 기소중지라든지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까지 공소제기 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몰수의 요건은 이렇게 의원님들 간에 조금 차이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제삼자에 대한 독립몰수·추징이 있는데 유상범·박균택·서왕진 의원안은 상속, 유증 또는 유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상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선의의 제삼자에게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제가 방금 보고드린 대상범죄, 요건 그리고 제삼자에 대한 독립몰수에 대한 조문대비표인데요, 조문대비표 마지막 칸 오른쪽 맨 끝 보시면 법무부가 의견을 조문의 형태로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법무부안도 같이 정리를 해 뒀습니다.

여기까지가 의원님들 간에 가장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세 가지 쟁점이고요.

그다음에 소위 자료 22페이지 보시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개정안들에서 정의 규정을 지금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몰수, 독립추징·몰수 절차 그다음에 관련 범죄, 피청구인, 권리자 등의 정의를 전부 신설하고 있는데 23페이지에 보시면 유상범 의원안 같은 경우는 ‘주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부과되는 몰수’ 이것을 독립몰수로 정의하고 있고, 박균택 의원안에서는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으로서의 몰수’ 이런 식으로 정의를 두

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절차적인 규정들인데요. 독립몰수·추징의 관할·청구·압수절차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개정안들에서는 일단 독립몰수절차는 관련 범죄의 관할 법원, 몰수 대상재산의 소재지 법원, 재산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중 어느 하나가 관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독립추징절차도 관련 범죄의 관할 법원과 추징을 명할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중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독립하여 몰수명령이나 추징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일정 요건하에서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몰수 대상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거의 공통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과 관련해서는 관련 범죄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다른 관할법원에 별도로 몰수·추징만의 청구가 가능한지가 지금 이 개정안들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조문대비표가 쪽 있고요.

다음, 33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도 절차에 관한 건데 독립몰수·추징의 심리, 명령, 특별재심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청구에 대해서 심문기일 없이 심리할 수 있고 검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 법원이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몰수·추징 명령의 형식을 판결 또는 결정으로 지금 의원님들 안 사이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 외에도 일정 요건에서 재심 청구가 허용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심문기일 열지 않고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 독립몰수·추징이 피청구인의 재산권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41페이지는 독립몰수·추징의 준용하는 규정들 그다음에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 규정 등을 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45페이지는 부칙입니다.

그래서 시행일을 의원님들 안에서 공포한 날부터 3개월·6개월로 이렇게 두고 계시고. 그런데 적용례 부분이 장경태 의원안과 박균택 의원안은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까지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상범·서왕진 의원안 그리고 박균택 의원님 두 번째 안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적용한다라고 적용례를 또 달리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중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는 독립몰수제 도입에 적극 찬성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25년 2월 24일 1소위 이후에 추가로 발의된 입법안 내용을 반영하고 법원행정처와 수회 협의를 거친 끝에 법무부·법원행정처 통합안을 도출했습니다.

소위 자료에 담긴 법무부 수정안에서, 어제까지 법원행정처와 추가 협의를 통해 법원

행정처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독립물수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사항……

○소위원장 김용민 잠깐만, 자료를 배포해 드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곽규택 위원 합의안이 어디 있어요?

○소위원장 김용민 통합안이 지금 만들어진 게 있으니 이것을……

그러면 지금 이것 말씀하실 거지요,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배포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배포해 드리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부칙 제2조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에 병기해서 기재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무부차관님 말씀과 같습니다.

대체로 입법정책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부칙 적용 부분에 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 차관님께서 법무부하고 법원의 합의안이라고 주시기는 주셨는데 이렇게 봐 가지고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면 중요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누가 설명하실 분 있으신가요? 차관님이 직접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뒤에 혹시 누가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쟁점이 있었고 그것을 법원하고 어떻게 정리를 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셔야지 저희가 알지.

○나경원 위원 갑자기 이걸 갖다 들이밀고서는 하라고 그러면…… 참 나.

○조배숙 위원 이걸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야.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 저희가 법안 심사할 때 통합안이 나오면 통합안 나눠 드리고 토론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달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곽규택 위원 좀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왜 또 화를 내시고 그래요.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또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이십니까?

○조배숙 위원 아니, 그렇지요. 지금 이게 25년 동안 여태까지……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지금 나눠 드려서 토론하시고 설명 듣고 질문하시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지금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곽규택 위원 해요, 해요, 그래.

○조배숙 위원 그래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소위원장 김용민 차관님,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 설명을 지금 들으시고 토론하시면 된다고요. 제가 지금 의결하겠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조배숙 위원 의결하는 건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의결하겠다고 안 했지 않습니까? 토론하시라고 했지.

○조배숙 위원 저는 의결하라는 줄 알았어.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바로 의결을 어떻게 합니까? 토론을 하시고 나서 해야지요.

○조배숙 위원 항상 해 와서.

○소위원장 김용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독립몰수 관련해서 독립몰수·추징의 대상범죄입니다.

독립몰수의 대상범죄를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침해범죄로 한정하되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그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되어 있는 것이 독립몰수·추징의 요건입니다. 독립몰수의 요건은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범인이 불특정인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되 추가로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그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몰수절차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생각합니다만 법원행정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재판의 형식은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정하는 등 관할법원과 청구 및 심리의 방식, 불복 절차, 준용 절차, 위임 규정 및 시행일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심리와 관련해서 재산상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을 열어서 심리하는 것으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와 유일하게 이견이 남은 부분, 부칙 제2조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독립몰수를 적용하는 경우 진정소급입법이 문제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할 때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법무부는 검토하였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진정소급입법에 대해서는 신중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 몇 가지 확인 좀……

○소위원장 김용민 예.

○곽규택 위원 원래 몰수하고 추징이라는 게 부수처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부수처분이 아닌 독립된 하나의 처분으로 하겠다. 결국에는 형벌을 새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경우에 저는 기존의 일반적인 몰수·추정보다는 범

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제시한 것에는 독립몰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지금 다른 의원발의 법안에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에 한정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어요.

지금 법무부·법원행정처 통합안이라고 하는 게 적용 대상 범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보다도 더 넓어진 형태 아닌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어서 범위는 더 좁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좁아진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열거한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민생침해 범죄에 한정하는 범죄군을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조에 기재된 것보다는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지금 상속·유증 또는 유류분을 받은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의원입법 안들이 몇 개가 있었던 말이에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여기 통합안에서는 어떻게 정리됐는지 모르겠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통합안, 제4조 2항에……

○**곽규택 위원** 몇 페이지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위원** 예.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이 조문에 대해서는요 현재 부패재산몰수법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했고요. 다만 법원행정처에서 기존 법률과 동일한 법조문의 형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무부 대안을 문언 내용만 고쳐서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즉 현재 부패재산몰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조문 형태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선의인 경우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상속·유증 또는 유류분을 받는 자가 선의인 경우에?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선의인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것 문제 아닙니까? 통상적인 몰수·추징은 보통, 생각을 해 봅시다. 범죄자가 사망을 했다, 그런데 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없어서 몰수할 물건도 없고 추징할 물건도 없다, 추징할 재산도 없다 이러면 끝인 거예요. 끝인데, 지금 이 독립몰수를 도입해 가지고 선의인 경우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면 통상적인 몰수·추징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더 몰수·추징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헌법상 금지하는 연좌제를 그대로 법에다가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선의일 경우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현재 부패재산몰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요건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그 요건을 그대로 독립몰수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상속의 경우에도 다 몰수하겠다는 거지.

○김동아 위원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소위원장 김용민 토론 마치셨습니까?

○곽규택 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부칙과 관련해서 적용례가 법무부안과 법원행정처안이 조금 다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박균택 위원님이 법을 대표발의하신 분 중의 한 분이신데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저는 제 의견이 법무부의 의견과 거의 그대로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법무부 의견이 부칙과 관련해서, 적용 시기와 관련해서 법무부와 제 의견은 일치하고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범죄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헌정질서 파괴사범에 대해서만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전두환·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서도 공소시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것을 합헌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몰수·추징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 법을 제가 발의를 하게 됐던 배경 중의 하나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에 의해서 비자금의 존재가 주장이 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에 의해서 비자금의 존재가, 실체가 이렇게 폭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전두환·노태우를 빼고 이 법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위헌 논리, 헌법상의 논쟁 이것도 극복 가능하지만 국민들의 정서에 이게 과연 부합한 입법이 되겠느냐라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 저는 소급효가 당연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이것을 빼다고 했을 때 과연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 전두환·노태우 가족 빼놓고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처 차장님,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예,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의 부칙 2조는 14조 2항과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금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조 6호 마목, 바목의 죄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몰수도 형벌과 다름없기 때문에 진정소급효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되고 또 관련 법률이 있으면 관련 법률에, 해당 여러 법률들이 있거든요. 그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규정하여 변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처 입장에서는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진정소급효는 가능하면 제한적으로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 원칙에 비추어 보면 그런다는 것이지 이게 절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신 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도 헌정질서 파괴사범에 대해서는 뭔가 형벌불소급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또 이게 국민 전체의 법감정, 정의 관념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특히나 요새도 내란을 꿈꾸는 세력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자손들에게는 사회가 주는 혜택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교훈적 차원,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저는 헌정질서 파괴사범에 한해서라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무튼 법원행정처는 원칙론을 말씀하는 것이지 절대 불가 입장까지는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좀 제가 궁금해서요. 16조를 보니까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법무부차관님, 검사가 청구 주체네요, 이것은?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예요, 민사절차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형사절차입니다.

○**김기표 위원** 형사절차예요? 그러면 원래 기본 형사절차는 피고인이 있고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에 맞아서 변론도 하고 하면서 형사와 민사 간의 약간의 입증 정도를 달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몰수하는 것도 다 기본적인 형사절차에 따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상태에서 몰수재판을 지금 할 수 있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피청구인이 마치 기존의 형사재판의 피고인인 것처럼 방어를 하고 검사가 기존 형사사건에서의 입증 정도로 입증해야 지금 성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이 성안돼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범죄와 연관된 사건에서 몰수·추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는 형사절차인 것이고요.

○**김기표 위원** 예.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피의자 사망 그다음에 소재불명으로 인해서 검거 가능성 희박 그다음에 성명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이지만 범죄로 인해서 취득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하게 그래도 소명 내지는 입증될 경우에 이와 같은 몰수·추징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범죄사실을, 지금 보니까 청구서에 쓰는 것 범죄사실도 쓰고 아마 결정문에도 그것을 쓸 것 같은데 몰수가 약간 단독형처럼 바뀌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의 형사사건처럼 증명 정도가 엄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다 그런 취지로 지금 법이 규정되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저희는 그런 점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이와 같은 몰수·추징 그리고 보전명령을 법원에서 할 정도의 소명·입증이 충분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안을 마련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입증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가능해야 되겠네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게 상정하기가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나경원 위원님, 토론하실 거지요?

○**나경원 위원** 예.

부칙안 말씀하시는데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이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 이렇게 써 있어요. 이로 취득한 지위는 뭘니까, 그러면? 그리고 헌정질서 파괴범죄라고 하면 어떤 죄를 말하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내란·외환·이적죄 등을 말합니다.

○**나경원 위원** 내란·외환·이적죄 등을, 아니면 이적죄 거기까지……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적죄하고 헌정질서 파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법률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란, 외환, 균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란과 이적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헌정질서 파괴에 내란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 이래서 ‘이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하면 굉장히 불분명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발생되었던 계엄과 관련된 그런 죄에 뇌물·횡령까지도 다 가져가자면 이로 취득한 지위는 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헌정질서 파괴범죄라는 게 꼭 4개의 죄로 해당할 수 있느냐, 그것도 더 넓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나경원 위원** 그런 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불확정적인 개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법무부안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법원행정처안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19조(독립몰수·추징의 심리) 관련해서 지금 의원들 안은 원칙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검사나 피청구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오늘 제출된 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조율된 안은 원칙적으로 심리하고 예외적으로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좀 바뀐 거거든요.

우선 법원행정처 차장님, 이게 법원에서 심문기일·심리기일 진행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고 보신 건가요, 의원들 안보다도?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왜 그렇지요? 이게 지금 범인이 사망했거나 국외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 독립몰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심리기일을 반드시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요건은 그러합니다마는 실제로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리는 열어서 그 정을 아는지 여부도 따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심리가 필요하다고 저희 의견을 낸 겁니다.

○박은정 위원 피청구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는 말씀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러면 그 범인은 대리인을 내세워서, 변호인을 내세워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게 가능한 사항, 가능할 것 같거든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박은정 위원 그런 경우에도 심리를 우선 열어 가지고 재판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조차도 안 될 때는 단서로 가는 겁니다.

○박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통합안 부칙에 법무부안·법원행정처안 보니까 결국은 몰수·추징의 집행에 있어서 그냥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그러니까 소급입법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깨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지금 법무부안은 그렇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법무부안은 당연히하고 법원행정처안도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부진정소급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광범위 안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서 이것은 소급입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필요한데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깨서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성을…… 이게 원칙을 깨는 건데.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 고심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기존의 결정례 등을 참고를 좀 했고요.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개인의 신권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과 그다음에 진정소급입법이 필요할 정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형량을 해서 지금 진정소급입법이 가능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정질서 파괴범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와 같은 사유에 관해서 독립몰수제를 적용하는 것은 그래도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해석을 해서 이와 같은 부칙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12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똑같은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14조 4항이 되네요, 14조 4항에 보면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그러니까 몰수대상재산하고 다른 재산하고 섞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요—‘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저는 이런 경우에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는 이것을 독립몰수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범인 외의 자가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법 249조 선의취득 있잖아요. 그거하고 충돌되지 않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래서 아까 광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 취지인데요. 현재 부패재산몰수법 4조 2항에 동일한 내용의 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어디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부패재산몰수법 제4조제2항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게 범죄로 인한 수익을 제삼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정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서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라는 요건을 두어서 현재 이와 같이 입법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잠깐, 죄송해요.

그러면 여기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라는 것이 제삼자의 경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좀 문맥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본인이고 그다음에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속인이 있고, 저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삼자잖아요,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범인 이외의 자고 상속인이거나 수증자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조배숙 위원**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조문 자체가 조금……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조문의 문언안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조배숙 위원** 저는 이게 오해가 되네요. 제삼자로 넘어가면 선의취득이 될 텐데, 그거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범인 이외의 자인데 무상이나 현저하게 저가로 귀속됐다면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 경우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제삼자가 제대로 가격을 주고 매입을 했다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문 자체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게 되어 있네요. 조문 정리를 조금 더 명쾌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현재 지금 입법화되어 있는 법률 조문을 그대로 원용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이게 입법화된 조문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현재 입법화되어 있는 조문입니다.

○**조배숙 위원** 어찌 됐든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이

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이라면 맞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소위원장 김용민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상속 또는 증여 또는 현저한 저가의 가격으로 재산을 취득한 이런 경우에도 시효는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무한정, 그러니까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저는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도 사실 그 정을 알지 못하고 상당 시간이 지나 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특히 증여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고요. 본인 재산인 줄 알고 여러 가지 활용을 했는데 다시 내놔라 이것이 과연 맞는지. 그래서 시효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지금 조문의 구조는 중대 민생침해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그 각 범죄의 공소시효에 따른 독립몰수가 되는 거겠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만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지나친, 사실 특히 독립몰수의 경우에 똑같은 시효를 주는 것이 맞는지……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독립몰수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대상범죄를 지금 7, 8개로 한정을 했고요.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도피 등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의 요건이 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처벌받지 못하지만 범죄로 인한 취득, 범죄로 인한 수익이 분명한 경우에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법안의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제삼자에게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저가로 취득했을 경우에 이것을 무한정하게 범죄의 공소시효만큼 그렇게 두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현실적으로 독립몰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요건하에서 이 재산이 피의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수증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저한 저가 내지는 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양수인 등에 대해서도 이런 정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본인 그다음에 상속인 거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제삼자에 넘어갔을 때는 아닌데, 지금 이 법문은 본인이나 그 상속인까지만 해당되는 조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 외에도 예컨대 무상 양도·양수 등의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삼자에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러니까 이웃집, 옆집 거주자에게 소유권을 잠시 맡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명의를 가까운 사람에게 이전해 놓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조문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 부분은 다 입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구체적 타당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곧바로 다 인정되는 것들은 아니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선의의 경우에도 그냥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광규택 위원님.

○**광규택 위원** 차관님, 지금 독립몰수라고 하는 취지는 저도 찬성을 해요, 저도 검사 시절에 이거 해야 된다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게 지금 독립몰수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범인이 사망한 경우 등 해 가지고 1·2·3호가 있는데 범인이 국외 도피해 있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아니면 소재불명이거나 범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이런 경우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받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범인이 사망한 경우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범인이 사망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부친한테서 상속을 받는 건 당연히 무상으로 상속을 받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고 상속을 받았는데 그거를 뺏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정식 재판 절차에서 유죄 확정도 안 난 상태인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한테 상속재산을 다 그냥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분명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법 취지는 좋은데 지금 14조 4항을 아예 생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김동아 위원**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광규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부칙에 보면 지금 법무부안하고 법원행정처안이 결국에는 양쪽에서 정리는 안 된 상태로 올라왔는데 저는 법원행정처안으로 가는 게 위헌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어차피 독립몰수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마당에 이걸 가지고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조금 줄이고 시작해 보고 그다음에 범위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인데 저는 지금 안에서 14조 4항은 생략하고 그다음에 부칙에서 법원행정처안으로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을 시비 소지가 없게 해서 일단은 처리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차관님, 어떠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 14조 4항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되는 범죄유형을 보시면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이 수익이 생기는 것들이 범인이 자기 명의로 자기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고 또한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범죄로 인한 수익임이 분명하게 입증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을 전혀 몰수·추징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4조 4항과 같은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박균택 위원** 아니,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자식들이 물렸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아버지한테 상속은 받았어요, 사망했을 경우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속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재판절차도 없었는데 이런 독립몰수절차만으로 그 재산을 갖다가 몰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과 함께 대상이 되는 그 재산이 범죄로 인해 취득한 것이고 그것이 몰수·추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록상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소명이 증명이지 증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유죄 판결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시효 얘기를 물어보는 게 사망하고 바로 이런 일을, 독립몰수·추징을 하겠다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그 사건이 묵혀져 있었던 거예요, 예컨대 마약 사건인데 예컨대, 어떤 사건이든. 그런데 한 5년이나 지나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겠지요. 5년이나 지나서 이거에 해당하니까 독립몰수 하겠다 이랬을 때 이런 경우도 선의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컨대 범인이 사망했어도 지금 이러한 경우는 공소시효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약 사건 보통 공소시효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

○**법무부차관 이진수** 보통 한 7~10년일 수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10년일 거 아니예요. 그러면 10년 안에, 이 사건이 10년쯤 지나서 밝혀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독립몰수를 할 수 있어요, 그때 돼서도.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나경원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면 상속인들로서는 10년 전에 상속재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었거나 뭘 운용을 했거나 그랬는데 갑자기 10년 있다가 이거 다시 다 내놔라 하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좌제 같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일종의 위헌·위법성 문제도 있을 거고 죄가 한정되어 있고 주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나쁜 죄다 그런 말로만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4항을 그대로 두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범죄로 인한 수익은 끝까지 우리가 환수하겠다 이런 취지는 알겠지만 선의의 경우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굉장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속이나 증여했을 때 그당시에 그것을 알았다든지 일종의 공범은 아니라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선의로 취득한 경우도 7년, 10년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 4항을 굳이 적용하려면 시효 부분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사망하고 나자마자 바로 이것이 있다든지…… 진짜 이거는 선의의 수증자, 선의의 피상속인, 선의의 취득자의 경우에는 상당한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용민** 박균택 위원님 토론하실 거지요?

○**박균택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명만으로 재산을 탈취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판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을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입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4조 2항 같은 경우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해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구할 수 있도록 이게 가능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몰수·추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사례와 같이 장기간이 되어서 내지는 그 재산의 소유자가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을 만한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구체적 결정에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나 독립몰수제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지금 선의취득이니 상속 문제, 상속인의 권익 문제를 지적하신 위원님이 계십니까라는 민사에도 보면 절도물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규정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정질서 파괴사범이나 이런 악인들이 취득한 재산을 그 후손들이 누리고 살게 한다, 그것을 옹호해 주자? 별로 타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친일재산환수법 보면 어떻습니까? 친일 행위를 통해서 얻은 재산, 여기에 대해서는 그 후손들에게 정당하게 상속된 것처럼 보이는 재산에 대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국가에 귀속시킬 수가 있고 헌법재판소가 그것이 합헌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정질서 파괴사범을 비롯한 반인륜적 범죄 또 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 내지는 그 자손들의 이익을 지켜 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 비춰 보더라도 그렇게 주장할 만한 거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그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조배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조배숙 위원** 제가 지금 14조 보니까 ‘제2조제6호 각 목의 죄는 이 법이 정한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법이 정한 몰수의 요건’ 제가 조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몰수의 요건’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범죄수익은닉법이라는 그 법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정한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 이게 몇 조인가요? ‘이 법이 정한 몰수의 요건’을 어디다가 쓰셨나요? ‘제2조제6호 각 목의 죄는 이 법이 정한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 이 법의 어디에서, 이 법에 의하면 어떤어떤 경우에 몰수를 할 수 있다 이게 어느 조항에 나와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9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9조와 10조.

○**조배숙 위원** 여기 9조가 없어서…… 9조에 나와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조배숙 위원** 거기에 요건이 어떻게 돼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9조 1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등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몰수의 요건이 있다 하는 것은 결국 이 재산이 범죄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범죄로 취득하거나. 그러면 범죄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범인이 사망한 경우, 그래서 범인이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받고서 몰수재판을 안 했는데 사망했다 그러면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범인이 재판 없이 그냥 사망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몰수할 수 없지요? 어떤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이요?

○**조배숙 위원** 예.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독립몰수제에 따르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본인이 유죄판결 안 받아도?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14조 4항이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아버님이 재판받은 바도 없고 그런데 몰수돼야 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균택 위원** 그걸 하자고 우리가 개정하려는 거라 지금 시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동아 위원** 저는 이 법의 본질이 사실상 14조 4항에 있다고 봅니다. 범인이 갑자기 죽었는데 어린 자식에게, 그 계좌에 있는 수백억 범죄자금이 그 자녀의 명의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몰수를 못 하는 그런 것을 막고 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삼자의 계좌를, 대표통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을 막고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부패방지환수범인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부패재산몰수법입니다.

○**김동아 위원** 이미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이미 입법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반영한 거고 해서 저는 같이 통과시키면 어떨까 싶고.

다만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환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상 피해자가 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피해자가요?

○**김동아 위원** 예, 그런 것까지는 고려가 안 돼 있나요, 아니면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

라서 환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되어 있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환부할 수 있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지금 범죄수익은닉법인데 부패재산몰수법으로 환부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환부가 가능한 범죄의 유형이 있고요.

○**김동아 위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죄 등도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가 환부하는 절차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차장님 말씀 안 들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저희가 부칙을 제외하고는 법무부 수정안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한 배경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 되고 있는 4항은 1항을 전제로 한 것인데요. 1항은 말씀처럼 몰수를 하려면 판결이 내려지고 유죄판결에 부수해서 몰수형이 가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건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 유죄판결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몰수형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4항까지도 의미가 있다라고 봐서 저희들은 수정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가 얼추 된 것 같은데요. 지금 14조 4항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일부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이 법의 가장 핵심 부분이 4항이다라는 반론이 있고 그 다음에 법원과 법무부의 합의 배경도 14조 4항이 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부칙의 2조 적용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안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과 법무부안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논의를 해서 합의를 이어 갈까요, 아니면 표결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어떤 게 나을까 싶습니다.

○**박균택 위원** 법원과 법무부가 동의하는 법안이라고 한다면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법원과 법무부가 지금 합의를, 오랫동안 논의했고 저희가 이게 오늘 처음 논의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한 번 토론을 했던 법이고 법원과 법무부가 합의를 해 온 안이기도 합니다.

○**조배숙 위원** 우리가 범죄수익을 옹호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런 생각은 없는 데……

○**소위원장 김용민** 그건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법이라는 게 한 번 제정이 되면 집행력이 있고 적용이 되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규정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어떤 사람한테 억울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걸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보자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 취지는 저도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법무부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재산몰수법에 이미 있는 규정이고.

현장에서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그 요건에 대해서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되고 또한 법원에서 재산권 침해 등의 가능성도 고려해서 가지고 구체적 타당성에 맞는 결정과 판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작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안 해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소위원장 김용민 법원은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불복도 가능합니다. 즉시항고도 가능하고 나중에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독립몰수가 되는데 혹시나 재판이 이루어져서 무죄판결 하면 형사보상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런 케이스로 부패재산몰수에 관한 법은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조배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소송 통계자료나 이런 건 혹시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건 미처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조배숙 위원님, 이것 기권하고 전체회의 가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걸로 하지요.

○김기표 위원 일단은 통과시키지요.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연구해서 저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지적하셨던 그 문제를 일단 오늘은 통과시키고 전체회의 때 자료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받아 보고 논의하고 만약에 전체회의 때 수정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수정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곽규택 위원 일단 우리는 기권할게요.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곽규택 위원 잘 모르겠어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지만……

○나경원 위원 부칙은 어떻게 하지요?

○곽규택 위원 부칙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용민 아, 부칙을…… 그렇지요.

○나경원 위원 부칙은 행정처안으로 가지요.

○박균택 위원 이 법을 저도 발의를 한 입장이지만 이게 제일, 발의를 하게 됐던 배경이 서민들의 피해 못지않게 전두환·노태우 자손들에 의해서 비자금의 존재가 드러난 그런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헌정질서 파괴사범이라는 것이 단순히 1980년대의 문제가 아니라 2024년도에도 일어났던 상황을 보면서 이런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역사가 흘러도 철저하게 단죄를 하고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끼쳐지는 이익은 절대 존재할 수 없

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는 국민의 법감정 또 역사적 교훈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걸 발의했던 입장인데 법원도 지금 이것은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원칙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제 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손은 현 정부에서 중국대사로 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걸 적용할 거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 안 할 것 아닙니까?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지고 이 독립몰수가 좌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취지를 해 놓고 적용하는 것은 검사의 임의대로 선택을 해서 할 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법원행정처안대로 그냥 그런 시비 소지를 없애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차관님, 야당 위원님들은 보통 검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높으신데 오늘은 조금 다른 결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정권이 바뀌어도 모르겠더라고, 이게.

○**소위원장 김용민** 이런 독립몰수제가 도입되면 자의적으로 청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체계 같은 것들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고민하신 게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는 법 통과에 집중을 했습니다만 이 범죄유형과 관련해 가지고 해당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기준이 분명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지요? 그래서 남용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하시고.

○**나경원 위원** 이게 소급효 문제도 있고……

○**소위원장 김용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특수성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헌정질서 파괴범죄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것 윤석열 정권이 다 포함된……

○**소위원장 김용민** 이 정도로 논의를 하시고요.

○**조배숙 위원** 아니, 다 포함되지 않아요. 이 법원행정처안에도 다 포함되지 않아요.

○**나경원 위원** 이 법원행정처안에도 공소시효 도과되지 않는 경우는 포함하니까 여당 위원님들 좋아하는 내란 청산이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지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포함이 안 되지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나경원 위원**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내란 청산에는 되는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안대로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대로 하면 너무……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위원님들 충분히 토론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결…… 소위에서 의결을 몇 번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곽규택 위원** 우리가 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들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부칙은 법무부안으로 하나?

○**소위원장 김용민** 예, 부칙은 법무부안대로 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표결한 겁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9인 중 찬성 6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76)

2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0)

2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9)

2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3)

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0)

2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1)

(17시14분)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 6건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혜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 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를 별표에 열거를 하고 있고요 그 범죄 중에 특정사기범죄랑 횡령, 배임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으로 정의를 해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고 이걸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법 개정해서서 특정사기범죄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몰수·추징을 두신 바가 있습니다. 필요적 몰수·추징은 2026년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들의 내용은 부패범죄에 일정 죄를 추가하고 또는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를 추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의원안인데요 부패범죄로 추가할 내용으로는 대부업법 또 채권추심법이 있고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로 추가할 죄는 대부업법 그리고 한창민 의원안 같은 경우는 특정사기범죄의 범위에 전세사기를 넣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행일은 각각 달리하고 있고 적용례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업법의 범위가 의원님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업법 19조와 채권추심법 15조는 밑의 3페이지 참고 조문에 보시면 어떤 죄들인지 나와 있고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공히 범죄피해재산 적용범죄에 넣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19조 2항 2호, 그러니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 이 부분은 의원님들 안에 공통적으로 다 범죄피해재산 적용범죄에 추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는 부패재산몰수법상 피해자 환부 대상범죄에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해서 불법 대부업의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각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발의된 의원안 6건은 부패재산몰수법상 추가하려는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 전제범죄의 범위를 일부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안 6건 중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특정 가능한 범죄수익으로서 피해자 환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 벌칙 규정에 한정하여 범죄피해재산 전제범죄로 추가하는 김용민 의원님 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기본적으로 범죄피해재산 범위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건데요, 일부 범죄에 관해서는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사기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표현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경우’로 돼 있는데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전세사기로 아예 특정을 해서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 및 주거안정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발생한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특정을 하는 것이 더 명확하리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부패재산 정의 외에 범죄피해재산 정의에도 포함해서 모두 함께 규정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조금 전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바꾸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맞다고 보여지고요. 대부업법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 간에 조금 범위가 다른데 그러면 어느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할 건지를……

○소위원장 김용민 가장 심플한 제 안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위원장인데 좀……

○소위원장 김용민 우리 위원회는 그런 전통이 없는 것 같아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아 위원 다른 거긴 한데…… 차관님,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재산보전처분을 내리고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사실상 재산보전처분이 정말 많이 남용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 알고 계세요?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수년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한 사오 년 동안 보전처분 때문에 재산이 묶여 가지고 변호사비도 제대로 납부 못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무적으로 보전처분을 너무 남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절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법을 보니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차관님, 그러면 범죄피해재산 적용범위를 추가하기 위해서 정의 조항인 2조 3호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별표에 또 추가하고 이 두 가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가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은정 위원 제가 발의한 법안 내용하고는 상이하기는 한데 사실상 법무부에서 저렇게 축소해 가지고 특정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깔끔하긴 할 것 같고요. 법의 취지도 살리는 것 같긴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안을 발의해 주신 박은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칙에서 시행일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하는 것으로 일단 돼 있는 법과 즉시 시행,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도 있고 한데 시행일을 법무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불법사금융 근절의 필요성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자를 주고 받는 것에 대한 사적 거래인 측면이 있어서 일반 법률례와 같이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곽규택 위원 유예기간 두는 게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김용민 적용례에 대한 의견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적용례는 다른 입법례에서 나왔던 전례와 같이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지요, 적용례나 부칙 이런 부분들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3)

(17시23분)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입니다.

일단 목차에서 간단하게 주요 쟁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보호관찰소장의 수사를 위한 수신자료 열람 등 근거 마련하고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1쪽은 넘어가고 2쪽 법률안 검토, 보호관찰소장의 수사를 위한 수신자료 열람 등 근거 마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효용 저해,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 등을 수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신자료를 열람 및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요지입니다.

개정안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신자료를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직접 수사를 하거나 수사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2020년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2020년에 개정되었고요,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보호관찰소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전자장치 부착법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부칙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내용인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대상 확대입니다.

검토 요지에서 현행법의 내용과 검토의견을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대상자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연령 제한을 삭제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후유증을 남기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리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범죄 재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개정할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호관찰 담당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재정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특히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의 대상의 확대에 상당한 규모의 인력 충원과 이에 따른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예정이므로 2019년 동 제도 도입 이후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현행법에 따라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판단하는 처우회의의 설치 근거라든가 일대의 전담 보호관찰의 기간 및 지정 해제 요건 등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입법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의 판단이나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의 기간 연장 여부를 법률의 위임 없이 법무부 내부 지침인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에 규율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행일은 역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도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이 집행 개시된 사람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보호관찰소장의 수신자료 열람 등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수신자료 사용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대상 확대입니다.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에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개정안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이고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차관님, 이게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가 전자장치 부착하고 범행 저질렀던 사건 맞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건은 남양주의 가해자가 다른 범죄로 인해 가지고 전자장치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접근금지명령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박은정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이 법이 굉장히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일대일 전담 마크하고 그다음에 보호관찰소장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급하게 이 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 것 같고.

실제로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 부착 관련해 가지고 보호관찰소의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것은 지금 수년 동안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충원이 잘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이 법은 여야 떠나서 우리가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을 통과시키고 그에 적합하게 빨리 정부 부처가 협의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신속하게 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또 토론하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여기 법무부 검토의견에 보면 150명 정도의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고 연평균 165억 원 수준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시행시키는 법 통과 즉시라고 돼 있거든요. 즉시 통과해도 이게 1인 전담 가능한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1인 전담으로 100명의 보호관찰관이 일대일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이 19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인력 확충을 위해서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성범죄자 중에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다시 분류를 해서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단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곽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차관님, 아까 지적된 거긴 한데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이 다 비공개로 돼 있어서 외부에서 감독이 전혀 안 된다라는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정책국장께서 직접 설명을……

○**소위원장 김용민** 오셨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나와서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입니다.

전자감독과 관련된 세부지침은 법규명령으로 만든다든지 외부에 노출을 하게 되면 대상자들조차도 그 상세 내용을 다 알 수 있게 되어서 부득이 외부로 노출하지 못하는 그

런 측면이 있고요. 전자감독이 잘 운영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범률은 국회에서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부적절하고요. 이 시행지침을 일단 여기 소위 위원님들한테는 제출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별 이견이 없으니까 통과를 할 건데 전체회의 때 지침에 대해서 저희도 당연히 비공개로 원칙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요. 국회의 통제는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저희 소위 위원님들에게는 가능한 빠르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원실로.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외부라는 것은 여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국민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논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조배숙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소위원장 김용민 예,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전자발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범죄와 관련해서 저는 보면은 전자발찌를 해도 전자발찌를 파괴하면서 또 아니면 전자발찌를 찢는 데도 범행을 한다거나, 굉장히 사실 재범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항상 모든 범죄가 그런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이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교육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잘못했으면 처벌을 해야 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이 다시 재범이 된다가 나 이렇지 않도록 사회 전반적으로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법무부에서는 어떤 근본적인 고민 같은 걸 좀 하고 계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금 교도소 출소자의 재수감률이 대략 한 22%가 좀 넘습니다. 즉 출소자 중에 약 23% 정도가 3년 내에 다시 재수감되는 것이 현실이고요. 지금 전자감독 대상자 관련해서도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한 50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전자감독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 2500명가량이 성범죄자들입니다. 이런 것이 규제와 통제만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교도소 수감자든지 아니면 일상에서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교정 내지는 교화를 통해서 사회에 복귀를 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건전한 사회로 될 텐데요. 사실 반복되는 범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정·교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단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약범죄 관련해서도 누누이 강조드립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마약범죄의 틀에서 이탈하기 위한 제도들이 너무 부족해서 그 부분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요. 성범죄자라든지 이와 같은, 그러니까 치료도 병행할 수 있는 제도 등도 저희가 더 검토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매우 품격 있는 토론과 원활한 회의 진행으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고 오늘 심사하지 못한 법률안들은 다음 회의에 다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기우종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곽규택 김기표 김동아 김용민 나경원 박균택 박은정 이성윤 조배숙

○청가 위원(1인)

진현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